

#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

2002. 4.

정 보 통 신 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목 차

## ▣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요

1. 지침의 성격 .....	1
2. 지침해설서 발간 목적 .....	1

## ▣ 개인정보보호지침 .....

2

## ▣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

제1장 총 칙 .....	14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	23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35
제4장 이용자의 권리 .....	57
제5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	63
제6장 보 칙 .....	70

부 록 1 개인정보보호마크제도 시행 안내문 .....	80
-------------------------------	----

부 록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 발췌 .....	86
---	----

#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요

## 1. 지침의 성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고시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 지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를 기대하는 것이므로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동 지침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지침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도 있다는 예고적 성격을 가진다.

## 2. 지침해설서 발간 목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이 개정·고시(2002. 1. 18.)됨에 따라 동 지침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 동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지침 각 조항별로 해당 조문의 규정 취지 및 외국 관련규정을 소개하고, 지침 규정에 대한 해설과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이행함에 있어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정보보호지침

고시 2002.. 1. 1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 나.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영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 나.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4.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호 각목의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6.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기관·단체 및 기타의 자를 말한다.

가.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나.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

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7.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방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①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동의는 향후 입증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제6조(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부서·지위·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의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7.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 또는 관리 방식

**제7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 공개)** 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호의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4.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가공목적·가공방식, 가공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또는 공개된 자료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화면에 필요한 조치(메뉴설정 등)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내의 다른 화면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이퍼링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이유 및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과거의 병력 등 건강상태 및 성생활

②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
2. 선택항목 : 기본적인 서비스외에 이용자에게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어 필요한 항목

④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9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이용자가 종전에 동의한 사항(서비스제공자가 종전에 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나 제공받은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항
3. 이용자의 동의하지 않을 권리와 의사표시 방법
4. 기타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 이용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제11조(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기술적·관리적 보호의무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받은 사실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수탁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제13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2.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이전받은 개인정보 항목
6.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및 이용기간

**제14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방법)** 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의 인터넷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최소 30일 이상 공지(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2. 서면·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점검

3.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4.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 ②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의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적 보호조치)**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2. 암호알고리즘 등의 이용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할 수 있는 보안 조치
3.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제18조(관리적 보호조치)**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등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신용카드번호, 은행결제계좌 및 사용내역 등 대금결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 확인, 전자서명의 사용 등 당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 제4장 이용자의 권리

**제20조(동의의 철회)**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철회에 따라 당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열람 및 정정요구에 대한 조치)**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서비스제공자등은 당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5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제22조(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 ①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 :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아동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목적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아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방법)**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제6조 각호의 사항
2. 서비스제공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경우 “이용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전화, 팩스 또는 우편

2. 아동으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지내용을 프린트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법정대리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볼 수 있도록 연결(하이퍼링크)시키는 방법
  4.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내용이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된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2.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양식의 서면에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3. 기타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제24조(법정대리인의 권리에 대한 조치)** ① 법정대리인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 제6장 보 칙

**제25조(교육)** ①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교육내용,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내부감사)** ① 서비스제공자등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고충처리)** 서비스제공자등은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분쟁조정)** 서비스제공자등 및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0조(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 본문란의 주요 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경로와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의 제목란에는 처음에 빈칸 없이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이어서 수신자가 전자우편 본문의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팩스·휴대폰 문자전송 등 전자우편이외의 문자전송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내용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전송내용중에 전송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

를 얻어야 하며,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 취지】

- 지침의 근거법 규정을 밝히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32조·제49조·제50조 및 제54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다.
- 동 지침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동법 제58조의 준용대상 사업자 뿐만아니라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와 개인에게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외국 관련현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80년 9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Data Flows of Personal Data)』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8원칙을 제시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보호 법규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1998년 10월 『범세계적 네트워크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각료선언』에서는 1980년에 채택한 8원칙이 인터넷 환경에서도 적합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각국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유럽연합(EU)은 1995년 10월 『개인데이터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 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채택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1998년 10월 24일 까지 동 지침에 따라 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동 지침은 EU 수준으로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데이터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이해와 통상을 촉진하고자 1998년 11월에 ‘1980년 OECD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s)」을 제시하여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 그러나 「Safe Harbor」를 채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유럽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미국 각 기업의 자주적 판단에 위임되어져 있으며, 1999년 11월 15일 “International Safe Harbor Privacy Principles(Draft)”로 수정·제안되어 2001년 6월 발효되었다.
- 일본은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의한 보호방식과 각 성·청의 행정지도에 그치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은 다수의 개별 법률의 일부 조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견해 때문에 입법을 유보하여 왔으며, 대부분 정부의 지침과 고시 및 민간의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구(舊)통산성은 1997년 3월 「민간부문에서의 전자계산기 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1999년 3월 공업규격(JIS Q 15001)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준수계획을 위한 규격」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ECOM: 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는

1998년 3월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별 입법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 2월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참의원에 상정중이다.

#### 【해 설】

- o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관리 및 책임에 관련된 조치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 행사 등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의미한다.
- o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동 지침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이지만 사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도 고려하고 있다.
  - 따라서 동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및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 “이용자의 권익”이란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일체의 이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 및 제공되지 않을 것,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기록되고 관리되는지 알 권리, 오류 정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등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나.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영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4.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호 각목의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6.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기관·단체 및 기타의 자를 말한다.
  - 가.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나.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
  - 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7.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방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 【규정 취지】

- 이 지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 【외국 관련규정】

-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국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국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 해당 데이터로부터 또는 해당 데이터와 데이터관리자가 보유하거나 보유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정보로부터 확인가능한 생존하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personal data” means data which relate to a living individual who can be identified - (a) from those data, or (b) from those data and other information which is in the possession of, or is likely to come into the possession of the data controller)
  -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Federal Data Protection Act)’ : 신원이 확인된 또는 확인 가능한 자연인의 인적·물적 관계에 관한 개별 언급들(“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concerning the personal or material circumstances of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the data subject))
  - 캐나다 ‘개인정보 및 전자문서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다만 조직의 피고용자의 성명, 직위,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는 포함되지 아니함(“personal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about an identifiable individual , but does not include the name, title or business address or telephone number of an

employee of an organization)

- 일본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것

## 【해 설】

### □ 제1호

-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념,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며, 법인(法人) 또는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다루어지는 자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지 않아도 당해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분류된다.
    - 전자의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후자의 정보로는 성명, 주소 등이 있다.
-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등
  - 심신의 상태 :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病歷) 등
  -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소속정당·단체 등
  -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등

### □ 제2호

-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
  -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 제3호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 전파사용,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가입전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
    - ※ 한국통신, 데이콤, 두루넷, 드림라인 등
  -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설비보유재판매역무, 설비미보유재판매역무, 구내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다.
    - ※ 007xx으로 시작되는 국제전화서비스 등
  -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고도팩스서비스, 데이터네트워크서비스(패킷교환, 회선교환, 가상사설망, 화상회의, 프레임릴레이, 회선재판매, 기타 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정보서비스(PC통신, 전자상거래, 음성정보제공서비스, 주문형정보서비스, 원격통신, 기타 온라인정보서비스), 온라인정보처리,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이다.
    - ※ 하이텔·나우누리·유니텔·넷츠고·채널아이 등 PC통신사업자, 한국통신 코넷·데이콤의 보라넷·아이네트의 INET·현대정보기술의 신비로 등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 700서비스 사업자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한 자”는 PC통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정보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등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웹캐스팅(web casting), 신상품이나 이벤트(event)의 안내, 구직·구인 알선, 경품제공 등의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법인 및 개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제5호

-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의 이용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처리 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규정 취지】**

- 정보통신망법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지침의 적용범위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 설】**

-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컴퓨터 입력을 위해서 서면으로 수집, 보존되어 있는 것이나 컴퓨터로 출력된 것 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서면 등 수작업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도 본 지침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 그러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 혹은 가정내의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집되고 처리되는 경우는 지침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①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개인정보를 인격권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호하도록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해 설】**

- 인터넷이라는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광범위한 유통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국가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이나 기업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이용이 활발해지면서 ‘홀로 있을 권리’ 또는 ‘사적 영역에 대한 침입과 공개 등에서 오는 피해의 보호’라는 소극적 측면에서의 전통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을 통한 민사법적 구제만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게 되었고,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부응하는 보다 동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파악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요청이 제기되었다.
- 개인정보의 중요성 내지 법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대부분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정보프라이버시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privacy information)’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동의는 향후 입증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규정 취지】

- 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의무사항이며, 수집 내용의 동의 여부는 개인정보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 제2항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 【해 설】

#### □ 제1항

- 제2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한 정보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서비스별 요금액, 납부 또는 미납한 사실, 미납액 등에 관한 정보이므로 요금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외를 허용하였다.

- 제3호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서비스제공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

□ 제2항

- “서명날인”에 의한 동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가입신청서 등의 서면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방법이나 자신의 성명을 자필로 직접 기재하는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의 교환이나 전자상거래시에 문서작성자가 문서에 표시된 내용이 본인에 의해 바르게 표시되었다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서명하는 방법에 의한 동의로서 이때의 서명은 서명자를 식별하거나 변조방지 목적으로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기호나 부호를 말한다.
-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향후 이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동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등 분쟁발생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에 의한 동의 방법은 정보통신망상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도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면상에서 「동의」 버튼 또는 「동의안함」 버튼을 클릭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별 칙】**

-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조(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부서·지위·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의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7.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 또는 관리 방식

#### **【규정 취지】**

-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약관 등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이며, 지침 제5조제1항의 동의 여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해 설】**

- “고지”하는 방법에는 가입신청서 등에 인쇄하거나 별도의 서면을 통해 교부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 고지는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초기화면에서 고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방침 등 기타의 형식으로 링크하는 등 이용자 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를 받는 해당 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할 수도 있다.
  - 이용자의 요구가 있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교부해 주거나 다운로드

드 또는 프린트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글자체를 조정하거나 테두리를 쳐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1호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부서·지위·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기타 연락처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권리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문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고지하거나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서비스제공자가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단지 “서비스의 제공상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주소 : 상품 배송, 청구서 송부

- 전자우편주소 :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안내

○ 제3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예를 들면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당해 쇼핑몰의 입점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상호·URL 및 주요 판매제품, 제공 후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제공받는 자의 명칭을 고지 또는 명시하도록 한 것은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통해 “제휴회사 또는 가맹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형태로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개의 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명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주된 사업을 고지 또는 명시하도록 한 이유는 이용자가 당해 상호만으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주된 사업을 밝힘으로써 이용자가 원치 않는 사업자(예컨대 성인용품판매 또는 포르노 정보제공을 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제4호와 관련하여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는 일환으로서 수집시에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명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5호의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의 예로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하며, 서비스제공자는 이를 지침 제8조제3항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고지 또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6호와 관련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이유”는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과 관련하여 고지 또는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요금의 정산, 연체금의 회수, 소송이나 분쟁 대비, 기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설정하여 고지 또는 명시하도록 한다.

#### **【별 칙】**

-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 공개)** 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호의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4.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가공목적·가공방식, 가공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또는 공개된 자료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화면에 필요한 조치(메뉴설정 등)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내의 다른 화면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이퍼링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이유 및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서비스제공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해 설】**

제1항

- “개인정보보호방침”과 관련하여 법인인 서비스제공자가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부문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개인정보 취

급에 관하여 당해 사업 부문마다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제정할 수 있다.

- 다만, 당해 법인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방침 위반시 최종적인 책임은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서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문서화하여 개인정보 수집시 이를 이용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 제2호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쿠키(cookie)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접속 정보, 전자우편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쿠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쿠키의 설정 및 운영, 쿠키를 통하여 얻은 정보 및 그 활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쿠키(cookie)는 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이며 여기에는 방문한 웹 사이트의 정보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겨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 제4호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통해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해야 한다.

#### □ 제2항

○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첫 화면에 하이퍼링크 형식의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의 란을 만들어 이용자가 언제나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제3항

○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개인정보 수집시에 이를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경시의 조치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이유 및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버전번호 등을 부여하여 개정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과거의 병력 등 건강상태 및 성생활

②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
2. 선택항목 : 기본적인 서비스외에 이용자에게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어 필요한 항목

④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정 취지】**

- 제1항에서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명확히 보호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수집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사상·신조 등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 제2항의 최소한의 정보수집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다. 서비스제공자가 불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

용하지 않고, 수집범위를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하였다.

- 제3항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구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및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므로,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기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 관련규정】**

국외 개인정보보호지침 중 수집이 제한되는 개인정보 항목

구 분	EU 지침(Directive 95/46/EC)	일본 통신성 공업규격(JIS Q 15001)
수집 금지 정보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 민족</li> <li>· 정치적 성향</li> <li>· 종교 혹은 철학적 신념</li> <li>· 노동조합</li> <li>· 건강 혹은 성생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상, 신조 및 종교</li> <li>· 인종, 민족, 출신지, 본적지(소재 도부 현에 관한 정보 제외), 신체, 정신장애, 범죄기록, 그외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되는 사항</li> <li>·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그외 단체행동에 관한 사항</li> <li>· 집단시위행위 참가, 청원권 행사, 그외 정치적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li> <li>· 보건의료 및 성생활</li> </ul>

**【해 설】**

제1항

-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것으로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들이다.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 예를 들면 이동통신사업자가 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 여 제시를 요구하는 신분증이나 의료보험증에는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요금 할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신체장애 및 국가보훈 대상 여부의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하다.
-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의료상담 및 진료를 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수집 금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 의료법 제20조(열람기록등) ②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기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1호의 “인종 및 민족”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상에서의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이 증대됨에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다. 이용자의 인종 혹은 민족적 기원이 다르다고 사회적·신분적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인종 및 민족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한다. 다만, 이용자의 국적을 나타내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있다.
- 제2호의 “사상”이란 인간의 논리적·지적인 판단작용으로서 하나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논리적인 형이상학적 사유체계를 말하며, “신념”란 세계관, 인생관, 종교관 등 일련의 가치관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 제3호의 “출신지 및 본적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1991년 6월에 사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제73조제4항에 “서식에는 호적·병적·연고지조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제4호의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은 공개될 경우 대부분 개인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적 자료들이다.
-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정보는 정당 및 노조 가입여부 등의 정보를 말한다.

- 제5호의 “과거의 병력 등 건강상태 및 성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의료상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을 금지한다.
  - 또한 본인의 건강상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의 병력(病歷) 및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다.

□ 제2항

- 개인정보의 수집은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집목적에 속이거나 해킹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로 제한된다.
  -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계약의 성립과 상품 배송 및 대금결제에 필요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통장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등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직업, 수입이나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별 칙】**

-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초과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9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이용자가 종전에 동의한 사항(서비스제공자가 종전에 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나 제공받은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항
3. 이용자의 동의하지 않을 권리와 의사표시 방법
4. 기타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규정 취지】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서비스제공자일지라도 다시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

## 【해 설】

### □ 제1항

-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상품배송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
  - 앙케이트조사, 판촉퀴즈,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우송하거나 입력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A/S센터에서 고객 불만 및 불편 처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 광고에 이용
  -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제공한 정보를 회원가입과 무관한 우편주문판매에 이용
  
-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달라지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이 동일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제공받는 자가 달라지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A계열사 내의 甲회사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기로 고지 또는 명시하였는데 A계열사의 乙회사에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A쇼핑몰의 甲입점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기로 고지 또는 명시하였는데 A쇼핑몰의 乙입점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제2호의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등)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공익성 및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 제3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행정목적이나 수사목적으로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해 온 경우라도 무조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장 또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하 “금융감독기관장”이라 한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기관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 초과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등) ③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였을 경우

에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 ①개인 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2. 고용 또는 인·허가업무에 사용하고자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 전기통신기본법 제45조 (보고·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4(정보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③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69조(비밀유지등)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법의 소추목적에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소비자보호법 제52조의6(자료 및 정보제공요청등) ①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한국은행법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와 은행업무·재정·물가·임금·생산·국제수지 기타 경제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①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 □ 제3항

○ “이용자의 동의”와 관련해서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에 의해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이용자 개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말한다. 즉 서비스제공자의 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동의 여부를 묻는 전자우편을 발송한 후 거부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로 간주한다는 동의 방법은 개별적인 동의로 볼 수 없다.

### **【별 칙】**

- 정보통신망법 제6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 이용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규정 취지】**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3항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누출 및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였다.

**【해 설】**

- “개인정보취급자”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자로서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함에 있어 인사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공식화하고 개인정보취급자외의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DB 등에 접근하였을 경우에는 내부 인사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1조(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 취지】**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제4항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해 설】**

-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현재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자, 과거에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던 자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정규직원에 한하지 않고 계약직원 및 임시직원을 포함한다.
- “개인정보의 누설”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작위에 의한 누설도 포함한다.
  - “타인”이란 비밀유지의 의무주체가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이므로 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제3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 이외의 내부직원을 포함한다.
-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던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별 칙】**

- 정보통신망법 제6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알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기술적·관리적 보호의무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받은 사실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수탁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 【규정 취지】

-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의 효율성이나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위탁받은 자에 의해서도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부정확하게 입력됨으로써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해 설】

### □ 제1항

- “개인정보의 위탁”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편집, 검색, 갱신 및 관리 등을 해당 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 서비스제공자등이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수탁자, 위탁기간, 서비스제공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및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다.

### □ 제2항

- 서비스제공자등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의 범위,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에 대한 금지, 위탁처리기간 등의 명기,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의 열람 및 정정 등의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위탁자이지만, 위탁의 형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열람 및 정정의 요구를 받는 청구 사무를 위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열람 및 정정 자체를 위탁계약에서 위임할 수도 있다.

### □ 제5항

-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한하여 서비스제공자는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제756조)을 진다.

#### ※ 서비스제공자와 대리점과의 관계

- 서비스제공자는 대리점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고, 대리점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대리점은 서비스제공자와는 독립적으로 가입신청과 요금청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비스 가입계약서상에 고객기본사항(고객구분, 고객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및 대리인 인적사항 등), 요금납부 관련사항(요금청구주소, 신용카드 관련사항, 예금계좌번호 및 예금주 전화번호, 주소 등)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
- 대리점에서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대리점이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대리점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책임을 지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일정한 책임”이란 서비스제공자와 대리점간의 계약 또는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및 침해발생시 이용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한다.

## **【별 칙】**

- o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6호에 의하여 위탁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13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2.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이전받은 개인정보 항목
6.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및 이용기간

### **【규정 취지】**

- 영업양도 및 합병 등의 경우에 일일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고, 기업결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다.
- 영업양도, 합병, 상속 등으로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의무가 이전·승계되는 경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 **【해 설】**

용어 설명



-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은 영업용 재산을 비롯하여 영업의 비결, 고객 관계, 경영조직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한다.
-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즉 합병은 당사회사간의 계약에 의해서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합병의 유형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 “흡수합병”은 당사회사 중에서 하나의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는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및 사원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신설합병”은 당사회사가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및 사원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갖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이전을 말한다.

□ 제1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등으로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자가 이용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자는 영업양도계약 체결 후 사실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대한 통지시기를 영업양도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이유는 영업양도 전에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이용자가 미리 인식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양도절차 외에 추가적인 절차상의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이익을 적절히 교량하기 위해서 영업양도의 계약체결시는 통지의무의 기산점이며 사업자는 실질적인 영업재산 이전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 그러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통지는 제14조제1항의 통지방법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점까지는 행해져야 한다.
- 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의 결의를 한 때부터 합병등기 전까지 이용자에게 당해 개인정보의 이전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영업양도의 경우 통지의무의 기산점을 영업양도계약 체결시로 정한 것과 달리 합병의 경우에는 통지시기를 주주총회 특별결의시로 정한 이유는 최근 소규모 인터넷 닷컴기업들의 합병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합병당사회사간의 합병발표 후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부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단체법상의 행위인 합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본격적인 합병절차가 진행됨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통지의무 부여에 따른 합병당사회사간의 절차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라도 합병에 따른 회원탈퇴 등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합병등기전까지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점까지는 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제2항

- 영업양수자등이 이용자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은 때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서 영업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권리의 이전, 채무의 인수 등의 행위가 필요하고, 고객이나 영업상의 비밀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상 또는 기술상의 비결을 전수하고 거래처 또는 구입처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양수인이 영업재산의 이전을 받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흡수합병의 존속회사와 신설합병의 신설회사의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한 때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흡수합병의 존속회사는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등기 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당사회사가 전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설립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설회사는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별 칙】**

-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7호에 의하여 영업양수 등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방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최소 30일 이상 공지(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2. 서면·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11조와 관련하여 영업양도·합병 등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승계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방법 및 불가항력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의 통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침의 이행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등의 착오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 **【해 설】**

- 제1항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영업양도·합병 등을 통한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서면·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 제2항의 “과실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 경우”는 이용자가 허위의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가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영업양도·합병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3.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4.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의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 **【규정 취지】**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내 관리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 **【해 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서비스제공자등에 의해 지명된 자로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의 목적 및 수단을 책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제2항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임원, 고충처리 담당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별 칙】**

-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8호에 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16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규정 취지】**

- 개인정보의 OECD 8원칙중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적정한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해 설】**

-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인되지 아니한 루머를 기록해 두거나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해 두거나 방치해 두어서는 아니된다.
- 개인정보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용자의 연락처, 직업, 주소, 학력 등이 과거의 일정시점에서는 정확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현시점에서 그 사실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신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적극적으로 최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존기간 지정 및 정기적 갱신을 제도화하여, 개인정보의 상태를 이용자에게 통지해 주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7조(기술적 보호조치)**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2. 암호알고리즘 등의 이용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할 수 있는 보안 조치
3.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 **【규정 취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기술적 대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 **【해 설】**

- 제1호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은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를 통하여 컴퓨터 및 자기매체에 대한 컴퓨터바이러스 침투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모든 프로그램 및 데이터 설치시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점검하고 디스켓 등의 무단 불법복사를 금지한다.
  -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시스템 및 데이터 손상에 대비하여 컴퓨터바이러스를 검사한 부팅디스켓을 유지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다.
- 제3호의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 장치”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은 보안 위반사항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외부의 불법접근에 대한 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보안 위반시도를 감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호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은 파일이나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한다거나 디스켓의 잠금기능(Lock) 등을 사용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적 보호조치)**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등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신용카드번호, 은행결제계좌 및 사용내역 등 대금결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 확인, 전자서명의 사용 등 당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관리적 대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 **【해 설】**

- 제1항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 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와 일반 데이터를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을 금지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 통제 등 출입관리절차
  - 개인정보 입출력 일자, 개인정보량, 주요내용 및 개인정보의 복사, 수정시 관리대장에 기록하며 개인정보 파기시에는 기록 내용도 파기
  - 장애발생시 대체절차
  - 통신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회선과 설비상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는 절차 등



**제 1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 **【규정 취지】**

- 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구체화하여 개인정보의 파기시기 및 파기방법을 규정하였다.

#### **【해 설】**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대금지급정보는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때
- 배송정보는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나 제공된 때
- 회원가입정보는 회원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 제1항제1호의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상법 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 ①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별 칙】**

-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9호에 의하여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장 이용자의 권리

**제20조(동의의 철회)**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철회에 따라 당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의사가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등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 【해 설】

#### □ 제1항

-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하지 않음을 말한다.
  -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가입의사를 철회(회원탈퇴 요구)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명시적인 요구와 관계없이 당해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단기 경품 이벤트 행사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기간 중 탈퇴 후 재가입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명시적

으로 회원가입시 약관 등 계약내용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행사기간 중에 가입한 후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행사기간이 종료한 후 즉시 삭제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자들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o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 전자서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기 때문에,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신원확인 및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된다.

#### □ 제2항

- o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이용자가 회원 탈퇴를 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회원탈퇴」 또는 「동의 철회」 등과 같은 란을 만드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게임사이트 등 유료사이트의 경우 회원탈퇴시 팩스나 우편을 통해 이용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는 회원탈퇴의 경우 이용자의 ID·패스워드 외에 회원탈퇴 절차상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답변 등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회원탈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이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항

- 서비스제공자들은 이용자의 동의철회에 대해서 당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별 칙】**

-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10호에 의하여 동의 철회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1조(열람 및 정정요구에 대한 조치)**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서비스제공자등은 당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통신망법 제18조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내용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를 가진 경우에 스스로 확인하고 정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의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규정하였다.

### **【해 설】**

제1항

-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정정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 서비

스제공자등은 열람 및 정정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기간을 경과한 것이 판명되는 등 정정·삭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체없이 정정·삭제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방문하여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항

- 서비스제공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ID,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열람 및 변경」 등과 같은 란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항

-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등은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하게 하여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열람·정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4항

-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오류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하고,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제3자 및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항

- 서비스제공자등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해당 정보의 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6항

- 서비스제공자가 당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서비스제공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

**【별 칙】**

-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10호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5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제22조(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 ①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 (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 :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아동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목적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

③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아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정 취지】

-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정보를 평가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아동이 입력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아동 및 법정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다.

## 【외국 관련규정】

- 미국은 1999년 1월에 「어린이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을 제정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공개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과 16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상업적 웹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공정한 정보관행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은 아동으로부터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모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의 운영자(“the operator of any website or online service directed to children”)와 ②아동을 영업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는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의 운영자(“the operator of a website or online service that has actual knowledge that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from a child”)에게 부과하고 있다.
    -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라 함은 “(i) 아동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또는 (ii) 상업적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의 영업부분 중에 아동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를 가리킨다. 다만, “위 상업적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 또는 그 아동 대상의 영업부분이 인명록(directory), 색인(index), 참조(reference), 포인터(pointer) 또는 하이퍼텍스트링크(hypertext link) 등 정보위치추적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를 이용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웹사이트나 온라인서비스에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해 설】

- 제1항
  - 만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후 승인이 아닌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결정권의 하나인 동의권의 유보라 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아동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수집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 아동의 성명과 나이를 수집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려는 목적보다는 지침에 규정된 아동보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제이므로 아동의 성명과 나이에 대한 정보의 수집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2항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서비스제공자등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아동에게 요구하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제3항

- “합리적인 노력”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은 최초 웹페이지에 만14세 미만과 만14세 이상을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연령을 입력하게 하여 만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된 고지 및 방법이 게시된 페이지로 링크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별 칙】**

-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11호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3조(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방법)**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제6조 각호의 사항
2. 서비스제공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 (이 경우 “이용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전화, 팩스 또는 우편
2. 아동으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지내용을 프린트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법정대리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볼 수 있도록 연결(하이퍼링크)시키는 방법
4.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내용이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된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2.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양식의 서면에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3. 기타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 **【규정 취지】**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어서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한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등이 동의방법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외국 관련규정】**

- 미국 어린이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은 운영자가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공개하기 전에 “진정한 부모의 동의”(verifiable parental consent)를 얻도록 요구하고,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법 제정일 이후 1년 이내에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동법시행규칙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법정대리인에게 동의서를 (online 또는 offline으로) 제공하고 부모가 그에 서명 날인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 특정의 온라인거래와 관련하여 부모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 부모로 하여금 수신자부담의 무료전화를 하게 하고 숙련된 응답직원을 통해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
  - 공개키 기술(public key technology)을 이용한 디지털인증(digital certificate)을 이용해서 동의를 얻는 방법
  - 부모가 위 열거한 방법 중의 하나를 통해 얻은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나 비밀번호(password)가 딸린 이메일로 동의를 표시하는 방법

## 【해 설】

- 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전자우편을 통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 가장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서비스제공자등에게도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일 수 있으나 실제 법정대리인이 발송한 전자우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므로 전자우편에 공개키 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한다.
- 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이 법정대리인에게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홈페이지상에서 다운로드한 일정한 형식의 인쇄된 양식에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이를 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서비스제공자등에게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동의방법은 아동 또는 제3자에 의한 도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제공자등은 확인전화 등을 통하여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

리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만14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이용대금의 결제수단을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카드사용시는 비밀번호 앞자리 2개 확인 등 카드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확인 등에 주의)으로써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
- 서비스제공자등이 법정대리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수신자 부담 형식의 무료전화를 통하여 훈련된 전문 상담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

**제24조(법정대리인의 권리에 대한 조치)** ① 법정대리인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규정 취지】**

-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입력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아동 및 법정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도 이용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여 법정대리인이 열람·정정 및 동의철회를 요구할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외국 관련규정】**

- 일본 ECOM 지침은 법정대리인이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 설】**

-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 서비스제공자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철회, 열람·정정 요구 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6장 보 칙

**제25조(교육)** 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교육내용,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규정 취지】

- 서비스제공자등은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본 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사내에서 교육하거나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해 설】

-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 내용”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정보통신부가 공표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이 있다.
- 제1항의 “교육 절차”는 교육프로그램 명칭, 개최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에는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원 및 파견직원도 포함된다.



**제26조(내부감사)** ①서비스제공자등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개인 정보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서비스제공자등은 소속 직원이 본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 **【해 설】**

#### 제1항

-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사항과 실제 이행사항의 합치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감사 실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계획서는 당해 연도에 실시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감사대상, 목적, 범위, 절차, 일정표 등을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2항

-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의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은 관련 직원의 지침 위반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서비스제공자등의 내부규정에 따라 경고, 감봉,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자등의 내부규정은 직원을 정당하게 구속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7조(고충처리)** 서비스제공자등은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규정 취지】**

- 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침해나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이행에 대한 의견 및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불만처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해 설】**

-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 및 불만사항의 접수”는 전화, 전자우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상에 상담창구 등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8조(분쟁조정)** 서비스제공자등 및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정 취지】**

- 개인정보 침해 및 오·남용 등으로 인해 서비스제공자등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 이용자는 기술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등과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 설】**

-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해 이용자와 심각한 이견이 있거나 이용자가 구체적인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중립적인 조정안에 의해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제29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규정 취지】**

- 경제적 약자인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실 및 손해의 발생, 침해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비스제공자등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서비스제공자등에게 전환시킴으로써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해 설】**

- “손해”의 범위에는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해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 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의 대해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 법 제2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것
  -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을 것
  - 침해행위가 위법할 것

**제30조(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 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 본문란의 주요 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경로와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의 제목란에는 처음에 빈칸 없이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이어서 수신자가 전자우편 본문의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팩스·휴대폰 문자전송 등 전자우편이외의 문자전송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내용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전송내용중에 전송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 취지】**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고,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임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정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외국 관련규정】**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등에서도 관련 주법을 제정하여 상업적 전자우편 표시, 정확한 전송경로의 명시 및 수신자의 수신거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콜로라도주의 정크이메일 법
    - 무단 상업적 전자우편의 실제발신지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를 금지

- 제3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주소나 도메인명의 사용 금지
- 발신자는 상업적 전자우편임을 표시하기 위해 메시지 제목란에 “ADV:”(이 순서대로 대문자 “A”, “D”, “V”, “:”)로 표시
- 발신자는 수신인이 향후 수신거부를 위하여 발신자의 메일리스트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
- 삭제요청자에게 메시지를 재발송한다거나 전자우편주소의 제3자 제공 금지

- 워싱턴주

- 제3자의 허락 없이 제3자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거나 상업적 전자우편 메시지의 수신점 또는 전송 경로를 식별함에 있어서 특정 정보를 달리 부정확하게 말하거나 불명확하게 전달하는 경우
- 또는 메일 헤더에 사실이 아니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무단 또는 허위 전자우편 금지

- 캘리포니아주

- 스팸메일 발송자가 ISP가 통지한 정책(policy)에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해 소송 제기할 수 있고, 허위의 도메인 명을 사용하여 메시지 발송하여 장애를 일으킨 경우 형벌 부과
- 전화번호와 같은 회신주소를 포함하여 주소록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광고 메일 속에 포함
- 사업자(자연인, 법인)는 부동산, 재화, 서비스의 임대, 판매, 임차 등의 상행위에 대한 무단광고 전자우편을 보낼 수 없음. 단, 무료전화번호나 반송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동 명기 내용은 메시지의 서두에 메시지 문안과 동일한 크기로 작성
- 수신인의 수신거부 요청시 발송 금지
- 부동산, 재화, 서비스의 임대, 판매 등을 위한 무단광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 메시지의 제목란에는 최소 4문자로 “ADV:” 표시
- 18세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는 최소 8문자로 “ADV:ADLT” 표시

- o EU에서는 원격계약에 관한 지침(Directive of 20 May 1997 Concerning Distance Contracts (97/7/EC)) 제10조에서 원치 않는 전자우편을 규제하고 회원국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해 설】

- o 제1항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홍보나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전송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향후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수신자가 전자우편의 제목만으로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전자우편의 열람 내지 삭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광고”라는 문구를 명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신자가 쉽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목란의 맨 앞에 명시하고 이어서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 전자우편의 본문란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전송자에게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특히, 본문란에 수신거부 버튼으로 수신거부하는 경우에는 향후 수신거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수신거부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메일 발송창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한 서비스제공자의 홈페이지에 링크되도록 하여 수신자가 직접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항과 관련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팩스를 통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전자우편을 통한 광고성 정보전송과 마찬가지로 “광고”라는 문구 및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 【별 칙】

-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15호에 의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1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 취지】**

- 정보통신망상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보관 또는 전송하는 현상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고려하여 누구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

**【해 설】**

- 서비스제공자등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에 권한없이 부정하게 접근하여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권한없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고의로 접근하거나 또는 동 설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남용하여 동 설비에 저장되어 있는 통신의 내용을 획득·변경하거나 저장되고 있는 통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 상업적인 이익이나 악의적인 파괴·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행해진 접근이나 그 외의 불법적인 접근을 금지한다.
  - 컴퓨터통신을 악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누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벌 칙】**

- 정보통신망법 제6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정 취지】**

-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해외에 유통시키거나 외국 기업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였다.

### **【외국 관련규정】**

- EU는 1995년 지침에서 EU 수준으로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데이터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 **【해 설】**

- 동 규정이 적용되는 국제계약의 상대방은 외국의 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들이다.
  - 정보통신방법을 비롯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법인인 경우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의 언어가 반드시 외국어일 필요도 없다.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금지되는 “계약”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이 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록 1

### 개인정보보호마크제도 시행 안내문

#### □ 추진배경

- 인터넷의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대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및 상품화가 가능해짐
  - 반면 사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의식 부재로 개인정보의 유출·침해사례 및 신용거래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 이용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로 인한 정보화의 불신은 국내 인터넷산업 및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이에 업계가 자발적이며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 민간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활용문화의 정착 필요

#### □ 추진내용

- 개인정보를 수집·취급·관리하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사업자) 및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마크(프라이버시마크) 부여



#### ○ 주관/후원

- 주 관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후 원 :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신청대상 : 개인정보를 수집·취급·관리하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사업자) 및 온라인 사업자

※ 관련사업자 예시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취업알선·경매 등 전자상거래사이트, 금융·의료사이트, 포털 및 검색사이트, 온라인 여행사이트, 사이버 학원·교육사이트, 이동통신사업자, 무선인터넷콘텐츠사업자, 기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등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수시 신청·접수  
www.privacymark.or.kr 또는 www.trustmark.or.kr

○ 심사기준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항목 : 총 59개 항목 (필수항목: 16개, 선택항목: 43개)

※ 필수항목은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며, 1개 항목이라도 누락시 과락 처리(심사 탈락)

※ 선택항목은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심사 총점에 포함되어 기준 미달시 심사 탈락

- 심사항목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한, 쿠키 활용, 이용자 동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여부
- 권리·의무 이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파기·위탁처리에 관한 조치 사항
- 이용자의 권리(동의 철회, 열람, 정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권리책임자 교육 조치 여부
- 비밀유지 및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조치 여부
- 이용자 권리구제에 관한 조치 여부 등

○ 심사절차



※ 심사절차 개략

- ♣ 신청업체 대상 사전 컨설팅
  - ☞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접수된 심사기준 설문지에 대하여, 필수항목 불만족 여부 및 기재 누락사항 사전 점검·지도
- ♣ 사무국의 온라인 심사
  - ☞ 심사기준 설문내용과 해당 웹사이트 표시·고지사항 등의 대조·검증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심사
- ♣ 실사팀의 서류 심사 및 사실 심사
  - ☞ 심사기준 설문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를 대조·검증하고, 사실검증 및 사업자 신원 확인을 위한 현장 사실 심사
  - ☞ 심사 증빙서류 : 붙임 2 참조
- ♣ 인증위원회의 최종심사 및 인정업체 심의·확정
  - ☞ 시민단체·학계·연구계·법조계·관계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인정업체 심의·확정

○ 심사종류 및 기간

- 심사종류 : 일반심사, 갱신심사, 위반심사(위반업체 인정 취소)
- 심사기간 : 신청후 2주일 이내 (단계적으로 기간 단축 추진)

○ 인정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간

○ 신청비용

신청수수료(심사료)	마크사용료	합 계
8만원	20만원	28만원

※ 신청수수료는 심사 진행비용이며, 마크사용료는 사후관리·교육, 정보 제공, 국제 협력, 취득업체 홍보, 등을 위한 비용임

□ 사후관리프로그램

-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방안을 지속 연구·보급하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하여 분쟁 해결의 신속 조치·지원
- 온라인 수시 모니터링 실시 및 이용자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심사기준 불이행·위반 업체에 대한 상시 감독 및 시정 권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실무자 대상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업체 내부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역량 향상
- 마크 불법도용을 예방하고 마크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인지도 확대를 위하여 복제방지용 솔루션 및 실시간 인증 검색솔루션 도입·보급

□ 취득업체 특전 및 지원

-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한 비실명 또는 위장가입 회원 검색을 위해 개인실명 확인서비스 무료·할인서비스 제공

-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서버모듈 구축비 할인에 관한 업무협력을 통해 취득업체의 전자서명 관련 투자비 절감 혜택 부여
- 방송·언론사를 통한 취득업체 광고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월간지 지속 홍보
- 해외 프라이버시마크 인증기관과 마크 상호인정 추진으로 OECD, EU 등 국제시장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권고에 대한 자체 대책으로 활용

※ 2002. 2. 5 한일 프라이버시마크 상호인정 MOU 체결



- 우수 관리사례를 발굴하여 국내·외 세미나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웹진 서비스를 통해 정책개선·분쟁사례 등 최신 정보자료 제공
- 취득업체간 개인정보 관리 노하우 및 시장 정보교류를 위한 협의체 활동 또는 공동 광고·홍보 기회 제공

[붙임]

□ 마크 로고 및 배너



□ 심사 제출서류 목록

사업자 (14종)	개인운영자 (16종)
인터넷사이트 초기화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 신고필증 사본※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 표시화면 개인정보관리책임자(취급자) 보안서약서 회원 가입 양식(또는 표시화면) 회원 정보변경 및 탈퇴 양식 사업자 식별·확인 표시화면 법인세 납부확인서 광고성 메일 발송 화면※ 14세 미만 회원 법정대리인 동의양식※ 보험계약서※	인터넷사이트 초기화면※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재학(재직)증명서 사본※ 관련 도메인 Whois 검색 표시화면 (도메인 등록 소유자 인적사항 확인) 서비스 이용약관(or 회원 회칙)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 표시화면 개인정보관리책임자(취급자) 보안서약서 회원 가입 양식(또는 표시화면) 회원 정보변경 및 탈퇴 양식 운영자 식별 신원정보 표시화면 광고성 메일 발송 화면※ 14세 미만 회원 법정대리인 동의양식※ 보험계약서※

## 부 록 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 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



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등의 사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성명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

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그 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3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사무국을 둔다.

제34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3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6조 (분쟁의 조정) ①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자료요청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 (조정 효력)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조정 거부 및 중지)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조정절차 등) 제36조 내지 제39조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제5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4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24조제4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2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22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6. 제25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29조 본문(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11. 제31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